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48
----------	-------

발의연월일 : 2023. 7. 19.

발의자 : 이달곤 · 박덕흠 · 윤영석

양금희 · 金炳旭 · 권성동

백종현 · 권명호 · 김예지

장기윤 의원(10인)

### 제안이유

항만기술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자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운영에 필수적인 항만장비의 공급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해운산업 성장 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항만기술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기준 10.9조원(2021년 9.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부산항·진해신항·광양항 등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주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외 시장에서 항만기술산업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 확보, 공급망 안정성 등 경제 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시장은 최저가 장비의 도입, 해외기업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 및 국내 육성 정책 부재 등의 요인으로 외국 생산품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진 한편, 국내 기업의 자동화 항만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진 상태여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전무한 상태임.

참고로 중국·미국 등 주요 선진항만국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항만장비의 개발·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

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에 대한 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간 협력과 인력 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특구 내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항만 시설사용료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특구 내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보관·하역을 위하여 필요 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제작·생산·유통·운영·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항만기술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항만기술산업특구”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제5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항만기술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기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항만장비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전담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

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의 내용, 범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 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 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

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2. 기술시험 및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구축·운영과 사용허가 또는 대여

제8조(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자격 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및 수요조사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교류 및 협력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3장 항만기술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1조(항만기술산업특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간 협력과 인력 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항만기술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항만 내에 위치하거나 항만과 인접하여 있는 지역일 것
  2.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여러 산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특구를 지정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12조에 따른 항만기술산업특구 육성계획(이하 “특구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구가 둘 이상의 광역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

려는 때에는 특구육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 받은 특구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자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항만기술산업특구 육성계획) ① 항만기술산업특구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육성계획과의 부합성
3. 특구 지정의 목표, 필요성 및 지정 효과
4.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5. 특구 내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특구육성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시·도지사

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항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육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특구육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
2. 해당 특구의 임대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시험·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내에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증·시험·인증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실증·시험·인증 등

제16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구에 입주한 항만기술사업자에게 특구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항만법」 제57조제1항과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7조(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특구에 입

주한 항만기술사업자의 원활한 인력확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 또는 투자촉진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특구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게 금융 및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에서의 고용보조금 등의 자금 지원과 금융 및 재정지원의 기준·절차·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항만기술사업자의 항만장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항만기술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또는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